

제조소[]
위험물 저장소[] 사용 중지[] 신고서
취급소[] 재개[]

※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일
설치자	성명			
	주소 (전화번호 :)			
설치장소				
제조소등의 구분	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			
설치허가 신청연월일 및 허가번호	년	월	일 / 제	호
설치완공검사 연월일 및 검사번호	년	월	일 / 제	호
위험물의 유별, 품명(지정수량), 최대수량	지정수량의 배수 배			
사용 중지(재개) 연월일	년	월	일	사용중지기간 ~
사용 중지사유				
안전조치 방법				

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11의2조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의 사용 중지(재개)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주소

신고인

(전화번호)

성명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소방서장 귀하

첨부서류	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- 법인의 경우 성명란에는 명칭(법인등록번호, 대표자성명 포함)을, 주소란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.
- 품명(지정수량)의 기재에 있어서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품명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()안에 해당하는 지정수량을 기재합니다.
- 사용중지기간란은 사용중지 신고 시에는 예상 사용중지기간을, 사용재개 신고 시에는 사용중지한 기간을 각각 기재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